

## 신개인연금신탁 채권형 제(1)호 약관(구 하나은행)개정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제12조 (신탁기간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적립기간은 10년 이상 연단위로 수익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이 되는 때까지로 정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은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각각 1년 이상 연단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12조 (신탁기간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적립기간은 10년 이상 월단위로 수익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이 되는 때까지로 정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제 2항의 적립기간은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1개월 이상 월단위로 변경할수 있으며, 제 3항의 연금지급기간은 1년 이상 연단위로 변경할수 있습니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약관은 2018.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.(적립기간 월단위 변경)</p>	<p>신개인연금신탁상품의 연금개시 시기의 다양성 필요</p>